

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면민원에 대한 회신

2016. 4. 15.자로 우리구에 접수된 귀하의 서면민원(접수번호232035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○ 민원내용 :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출방법 문의(2차)

○ 답변내용

- 귀하께서 분담금 산출방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북아현 1-3구역 관리처분(변경)계획 제12조(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출방법)제2항의 분담금의 산출방식은 2016.4.8.일자로 귀하의 1차 서면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[별지제4호2서식]에 근거하고 있으며,

- 조합원별 분담금 산출의 구성요소인 비례율, 조합원별 권리가액은 도정법제48조제5항에 따라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·군수가 선정·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를 기초로 산출하여 2014. 7. 24.북아현3구역 「2014년도 관리처분(변경)계획 총회」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정비과(담당 : 이용식☎330-8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끝.

